

추가납입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

[2025년 6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1조【목적】	3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5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5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5
제3관 보험료의 납입	6
제5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6
제6조【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6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6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6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7
제9조【해약환급금】	7
제10조【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8
제11조【보험계약대출】	8
제5관 기타사항	8
제12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9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0

추가납입특약 무배당 약관

※ 약관조항에 대한 '해설' 또는 '사례'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및 적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공시이율: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추가납입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0조(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추가납입보험료: 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납입 보험료로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나.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말하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가능 합니다.

(1) 계약자는 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2) 제3호 라목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 됩니다.

(3) 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말합니다.

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 보험료(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의 납입한도는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계약이 월납 계약일 경우 : 주계약 보험료 x 12 x 100%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③ 제2항 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계약자는 주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제2항 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계약자가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제4항에 따라 청구가 있었을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회사가 적립한 당시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이 특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및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에 대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9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5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에서 정한 한도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월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6조【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할 경우 더 이상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해설: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 함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을 말합니다.

【해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중금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가입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해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15년 동안 0.75%인 경우,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75%)이 아닌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0.75%)로 적용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9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해약환급금을 산출할 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10조【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시점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다만,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이 특약의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2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3조 제5항 및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제3조 제5항) 및 해약환급금 (제9조 제3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주계약의 만기 도래 7일 이전에 만기시 지급할 사유와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적용이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